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13	3. / (총 22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정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당자 한연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송은 철 담당자 유효연	02-2113-7660 02-2133-7669 전 화
경기도	과 장 윤덕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최문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유보영	044-202-3530
기획총괄팀	담당자 박재우	044-202-2402

코로LHI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평생친구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 현재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 지난 한 주(12.6.~12.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2명**으로 **그** 전 주간(11.29.~12.5.)의 **487.7명**에 비해 **174.3명 중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9명**으로 **그 전 주간** (11.29.~12.5.)의 **116.3명**에 비해 **10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1.15.~11.21.	11.22.~11.28.	11.29.~12.5.	12.6.~12.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55.6명	400.1명	487.7명	662명
60세 이상	67.4명	85.9명	116.3명	219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30.7명	24.3명	25.9명	27.7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46건	40건	49건	16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9%	14.2%	17%	22.8% (1,099/4,828)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45.6	39.5	43.3	37.2
즉시 가용 중환자실	113개	86개	55개	62개
국사 기상 8년시킬	(11.21.9시기준)	(11.28.9시기준)	(12.5.9시기준)	(12.12.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494.4명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늘(12.13.) 수도권이 786명**을 기록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평 생 친 구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77.7명**, 충청권 36.3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6.~12.1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94.4명	36.3명	21.9명	16명	77.7명	13.4명	2.3명
60대 이상	160.4명	9.9명	3.4명	5.1명	34.9명	4.7명	0.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12.9시기준)	13개	3개	9개	6개	17개	4개	10개

- □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으로 현재 사업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대폭 늘리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 하여 감염원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 대응 역량을 최대한 확보 중에 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하였다.











평생친구

2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에 매일 1천 명 환자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상황분석

- □ (환자발생)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2명 (수도권 786명, 그 외 217명)이며, 최근 1주간(12.7~12.13) 하루 평균 환자수는 719.7명이다.
- 12월 13일 수도권 환자는 786명(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이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0명(서울 279.3명, 경기 219.3명, 인천 41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 (병상현황) 현재(12.12. 기준)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280병상, 중중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 이 중 가용 병상(=보유병상-사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사용 2,710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40병상(사용 1,840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 13병상(사용 263병상)인 상황이다.

2. 향후 필요병상 예측 및 대응목표

- □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 간 **1만 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
 - * (격리해제 가정)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발생은 540명, 격리해제는 234명으로 격리해제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하루 격리해제자 500명 추정











평 생 친 구

○ 이를 환자의 중증도로 다시 분류하면, ①무중상·경증 7,000명(70%), ②중등도·고위험군 2,700명(27%), ③중증 300명(3%)의 병상 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필요병상 예측 및 대응목표 >

현재 가용	병상
전 체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13병상

	추가 확보	
12/13 ~12/20	12/21 ~12/27	12/28 ~1/2
2,519병상	1,610병상	776병상
1,140병상	569병상	551병상
70병상	130병상	87병상

총 확보
10,000병상
7,000병상
2,700병상
300병상

3. 병상 확보계획

- □ 구체적 병상 확보계획은 다음과 같다.
 - ※ 부처 별, 지자체 별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 중으로 동 확보계획 외 추가 병상 확보도 가능(예: 지역 내 대학기숙사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지정 등)
- ① 생활치료센터 : 7,000병상 확보 (사용가능 2,095병상 + 4,905병상 추가)

<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현황 >

기확보	사용 중	사용 가능	추가 확보 목표
4,805병상	2,710병상	2,095병상	4,905병상

- **지자체와 중수본 지정의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으로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총 7,0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지정* 18개 센터(1,501병상), 경기도 지정** 4개 센터(858병상), 중수본 지정*** 3개 센터(1,050병상)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그 밖의 병상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여 확충할 예정이다.











평생친구

- * 서울시 oo교회 수양관(280), 17개 구청 별 지정 호텔(1,221)
- ** 이천 SK 인재개발원(138),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204), 안성 표준협회연수원(286), 고양 동양인재원(230).
- *** 아산 경찰인재개발원(400).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600). 수원 보훈교육연수원(50)

② 감염병전담병원 : 2,700병상 확보 (사용가능 440병상 + 2,260병상 추가)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

기확보	사용 중	사용 가능	추가 확보 목표
2,280병상	1,840병상	440병상	2,260병상

-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2,7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 이 중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병상(서울 207, 인천 86, 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복지부) 건보공단 일산병원(97), 국립정신건강센터(47), 적십자병원(서울 37, 인천 62, 상주 188, 영주 142). (국방부) 대전병원(86), 대구병원(303), (고용부) 경기요양병원(160), (경찰청) 경찰병원(161), (보훈처) 중앙보훈병원(120), (기타) 원지력병원(133), 세종 충남대병원(50) 등
- 이와 더불어, 지난 2월~3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전체소개를 통해 450병상 이상 확보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③ 중중환자 치료병상 : 300병상 확보(사용가능 13병상 + 287병상 추가)

<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 현황 >

기확보	사용 중	가용가능	추가 확보 목표
333병상	320병상 (일반중환자 포함)	13병상	287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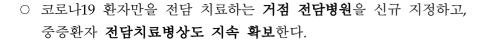












-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병상을 전부**(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하여 152병상을 확보하고,
 - *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
-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중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10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 신종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06년부터 설치·운영
-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신고병상을 활용하여 27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4. 총력 대응방안

- □ 병상확보 및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재정지원 확대,** 병상 활용 효율화 등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의료인단체 협조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 의사의 경우 공공의료인력 280명(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며, 대한 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 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
- 전국 의과대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역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1차 300여명, 계속 지원 중)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평생친구

-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하여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일 32.7만원 → 65.5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하며, '21년 손실 보상 기준 인상방안 마련하고,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방안 등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 **중중도에 따른 신속한 환자 분류,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으로 병상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기준에 따른 철저한 중증도별 환자 분류와 함께 의료기관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중증도 재분류**를 통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 환자는 중증환자병상으로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그 밖에 입소절차 간소화*, 오전 10시 이전 조기 퇴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 등으로 이틀 이상 입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 입소 전 시행하던 문진 등 건강진단 절차를 입소 후에도 시행가능토록 개선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55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컨테이너 39개소, 음압텐트 11개소, 몽골텐트 5개소** 등을 설치하되, 컨테이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몽골텐트 등 임시천막을 우선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현수막, 서울시 및 자치구 대표 SNS, 대표 블로거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역 소상공인회, 법정단체, 통·반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익명·무료검사를 전방위로 홍보한다.
 -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신교 주요교단과 긴급 간담회를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충해 가고 있으며, 그간 712병상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수원병원·의정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높아짐에 따라 **추가 센터 개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개원 의료기관 등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







평생친구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01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80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198명 증가하였다.
- 어제(12.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2월 1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6057개소,
 ▲학원 1,108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960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3.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흥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m²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키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평생 친구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괸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홰(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괸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 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8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평생친구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평생친구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유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평 생 친 구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복지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잡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